

대구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3268(본소), 2016나23275(반소) 판결 [구상금
등 ·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3268(본소), 2016나23275(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34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11. 3.

판결 선고 2016. 11.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345(본소),
2015가합15453(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각 50,614,904원, 선정자 E에게 98,530,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각 96,628,517원, 선정자 E에게 144,543,7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94,633,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1,3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1. 1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73,386,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중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중 합계 199,759,917원(선정자 C, D 각 50,614,904원, 선정자 E 98,530,109원)의 구상금청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중 합계 337,800,756원(선정자 C, D 각 96,628,517원, 선정자 E 144,543,722원)의 구상금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2,340,000원 부분을 인용하고, 21,247,420원의 장례비반환청구, 273,386,548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29,037,500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합계 199,759,917원의 구상금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합계 337,800,756원의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1,247,420원의 장례비반환청구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29,037,500원 부분에 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8, 9, 10, 13 내지 16, 21, 22, 25호증, 을 제1, 3, 8, 9, 10, 11,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에서 한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00. 3. 22.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8. 10.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F의 처이고, 선정자 C, D, E은 F의 자녀이다.

나. F이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F의 막내인 선정자 E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하고, 증여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2008. 12. 21.경 피고가 원고를 직위 부장급, 근무방식 재택근무, 채용기간 입사 후 8년간, 급여 월 3,000,000원(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재택근무계약서(이하 '이 사건 재택근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1.부터 2014. 12.까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16,000,000원(= 3,000,000원 × 72개월), 상여금 명목으로 총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명목으로 총 17,166,760원을 원고를 위하여 부담하였다.

라. 그런데 F은 2001. 1. 16.경부터 2004. 2. 27.경까지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이를 생략한다), 부산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2004. 8. 2.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4. 10. 22. 화의인가결정(울산지방법원 2004화5호)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4. 11. 6. 확정되었다. 인가된 화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화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파이낸스사, 카드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캐피탈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공사를 말한다.

마.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회사(피고)의 주주 및 임원과 | 주식회사를 말한다.

2. 화의조건

가.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서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생략)

나.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① 원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말에 원금액의 10%씩 분할변제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말에 원금액의 15%씩 연간 분할변제하며, 2014년 말에 원금액의 25%를 변제한다.

② 기발생이자

이율은 약정이율(단, 약정이율이 연 3%보다 높을 경우에는 연 3%에 의함)로 하고, 2004년 말에 변제한다.

③ 장래발생이자

이율은 연 3%로 하고, 2005년부터 매년 말에 변제한다.

다.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채권자 중 별제권을 포기하고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변제조건

① 원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채차할증 상환방식에 의해 분할변제한다.

② 기발생이자

이율은 약정이율(단, 약정이율이 연 5%보다 높을 경우에는 연 5%에 의함)로 하고, 2004년 말에 변제한다.

③ 장래발생이자

이율은 연 5%로 하고, 매년 말에 변제한다.

라. 담보권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한 변제조건

① 원금

2013. 12. 31. 이후 위의 가, 나, 다의 화의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 변제한다.

②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

바. F의 사망 후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선정자들은 2010. 12. 24.경 F의 상속재산 중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40,962,326원, 보험료 환급금 6,290,238원, 저축예금 19,234,764원 합계 66,487,328원(= 40,962,326원 + 6,290,238원 + 19,234,764원)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2. 15.경 F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선정자들이 F으로부터 상속한 피고 발행주식 합계 342,220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를 압류한 뒤, 2012. 5.경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 합계 133,277,955원(= 선정자 C 보유분 28,454,250원 + 선정자 D 보유분 28,454,250원 + 선정자 E 보유분 76,369,455원)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사. 2004. 12.경 화의조건에 따라 감축되어 피고가 화의채권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화의채권 총액 및 2015. 9.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화의채권 원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국민은행	3,796,000,000원 및 560,000\$	3,011,693,833원	963,742,028원
부산은행	700,000,000원	198,161,484원	0원
우리은행	250,000,000원	88,913,683원	0원
중소기업은행	1,499,800,000원	631,636,879원	196,917,820원
하나은행	1,200,000,000원	1,200,000,000원	384,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096,500,000원	2,816,834,155원	261,100,562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00,000,000원	325,000,000원	0원

아. 한편 원고는 2004. 6. 25. F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우리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9100호)을 제기하여 2006. 12. 1. 우리은행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우리은행 등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4건의 가압류(청구금액 합계 약 61억 원)를 하였다.

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4. 25. 선정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0.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선정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1.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2011. 9. 2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등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차. 원고와 선정자들은 F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3. 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라 최종지급 다음 날인 2015.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6. 4. 30.까지의 48,000,000원(= 3,000,000원 × 16회) 및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말일 3,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약정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이 피고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234,366,760원(= 216,000,000원 + 1,200,000원 + 17,166,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9,019,788원의 합계 273,386,548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H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증여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약정은 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가 2014. 12.경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이후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선정자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자인하였는데, 선정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선정자 E이 2013. 10.경 성년이 되므로, 피고는 2013. 10.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대표권 남용 또는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2000. 3. 22.부터 8년 이상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일하여 오던 중 2008. 10. 24. 피고 야유회에 참석한 다음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 다음 날 사망하였으므로, F이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F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원고와 선정자들로서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 ③ F의 후임으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된 H은 다른 이사들과 상의한 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유가족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이 6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선정자들이 피고의 주주이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화의 중이었고 F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마치 원고를 피고의 부장으로 채용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꾸미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회계처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와 다른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이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⑥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사망한 대표이사의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그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회사의 영리 목적에 반한다거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F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이 사건 아파트로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F의 퇴직금 등 66,487,328원, 피고 주식 매각대금 133,277,955원,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142,237,284원 등으로 그 합계액이 342,002,567원에 달해, 이 사건 약정금 합계 288,000,000원(= 3,000,000원 × 96개월)을 초과하는 점, ⑧ F이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위 돈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F의 사망 당시 피고가 화의 중에 있어 이를 구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화의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점, 그밖에 F와 피고의 관계, F의 사망 경위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 과정,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문제 삼게 된 경위 등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H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증여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약정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택근무계약을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재택근무계약서에는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8년간 월 3,000,000원씩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직접 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히 표시되어 있는 점, 기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약정이 체결된 경위 및 그 후 피고가 6년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택근무계약서는 민법 제555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2013. 10.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장 제7면에 "피고가 선정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00,000원씩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H 등이 원고 등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1.부터 8년간 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증여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재택근무계약서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정자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피고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 및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구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의 49제일인 2008. 11. 19. 원고에게, 만일 F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된다면 피고가 이를 낙찰 받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원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 2008. 11. 19.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2년 전으로, 아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약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인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대차 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은 F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선정자들에게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고,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④ 그밖에 F과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F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제1심에서 한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2015. 5.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대차계약의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그런데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 6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우호관계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민법 제613조 제2항 후문이 정하는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행사하여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따라서 공동차주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민법 제616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5. 6. 1.부터

피고가 구하는 2015.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월 7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340,000원(= 780,00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위 기간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권준범

판사성기준

별지